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b></p> <p>1. 제안자 ○ 서울특별시장</p> <p>2. 제안이유 ○ 주차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 가능한 주차장의 시설의 종류를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”에서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”로 함.(안 제2조제2항)</p> <p>나.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, 전기시설, 판매시설 또는 관람점회시설”에서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, 문화 및 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”로 함.(안 제10조제1항)</p> <p>다.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”에서 “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”로 함.(안 제10조 제2항)</p> <p>라.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 부설주차장의 최저 설치기준 초과부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“근린공공시설, 균린생활시설, 창고시설, 노유자시설”에서 “근린생활시설, 창고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·노인복지시설”로 함.(안 제13조의2제5항)</p> <p>마.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별표에서 규정하는 주차요금과 달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3조제1항)</p> <p>바.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와 16인승이하의</p>	<p>소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등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,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,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함. (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7조의2제4항 등)</p> <p>사.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주차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정수금액의 “30/100”에서 “30/100이상”으로 조정함. (안 제5조제2항)</p> <p>아.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시간 단위에 관한 규정(최초 단위 30분, 추가단위 10분)을 폐지함. (제11조의2 삭제)</p> <p>자.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을 위한 주차용도의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,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 도로점용허가제를 폐지함. (제20조 삭제)</p> <p>차.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종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 등을 조정함. (안 별표2 및 별표3)</p> <p>○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13개군에서 8개군으로 단순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함.</p> <p>○ 다가구·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다가구·다세대 주택간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함.</p> <p>4. 검토요지</p> <p>가. 시설물 종류의 용어정리(안 제2조제2항) ○ 건축법시행령('99. 5. 9)과 주차장점시행령('99. 6. 30)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 종류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현행 ‘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</p>
--	--

<p>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'에서 '제1종 및 제2종 균린생활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'로 변경하는 것임.</p> <p>나.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자 함. (안 제3조단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상 및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조례 &lt;별표1&gt;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만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</li> <li>○ 주차장법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에서 "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물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.</li> </ul> <p>다. 하역주차구간의 가산금 부과대상을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로 변경(안 제3조제2항 제5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노상주차장에서의 가산금 부과대상에 "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"에서 "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"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.</li> </ul> <p>라. 주차거부규정 일부 삭제(안 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주차요금 사전납부 대상차량으로서 사전납부를 거부하는 경우(제6호)</li> <li>-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(제7호)를 삭제하고자 하며, 사전 주차거부보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.</li> </ul> </li> </ul> <p>마.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조정(안 제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 현행 징수금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인건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금액의 30/100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문제가 없다고 봄.</li> </ul>	<p>바. 사전 징수요금대상 조정(안 제6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타 시·도 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서울시자동차와 달리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.</li> </ul> <p>사.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제한 차종 폐지(안 제7조의 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화물자동차는 예외로 규정하고</li> <li>○ 현행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차량의 주차금지와 관련하여 차종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역 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.</li> </ul> <p>아.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 폐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 제8조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되어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/ul> <p>자.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용어정비(안 제1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가 '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'로 규정하던 것을 '제1종 제2종 균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 문화 및 청화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'로 개정코자 하며</li> <li>○ 현행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'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균린공공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'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</li> <li>○ 주차장법시행령 개정('99. 6. 30)과 건축법시행령개정('99. 5. 9)으로 시설물의 용도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/ul>
---	---

<p>카. 조례 제11조의2(주차시간 단위) 폐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규정하던 것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되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가 모두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</li> </ul> <p>타.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을 현행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 (안 제13조)</p> <p>파.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(안 제13조의 2)에 있어서 관련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 가 없음.</p> <p>하. 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, 유료, 이용시간, 이용대상차량, 기타 주차장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 고시(조례 제14조의6) 하면 것을 공영부설주차장 자율화로 삭제하는 것임.</p> <p>거. 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(조례 제20조) 폐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가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</li> </ul> <p>너.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&lt;별표 2, 3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설물 종류가 현행 22개에서 8개로 단순화시킨 것은 건축법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조정결과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하며</li> <li>○ 특히 다가구 주택의 세대당 설치기준이 현행 0.6대 이상에서 0.7대 이상으로 강화됨으로써 신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 건설업체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, 현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구분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나, 양 주택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용도변경이 곤란하므로,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(0.7대 이상)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며, 이에 따라 민원이 예상되나 주택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44%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설치 허용한 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으나, 주차장 설치 제한제도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수요 억제정책이므로 주택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함.</li> </ul>
---	--